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Survey 결과 분석

송병록 /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원

I. 설문조사의 개요

지난 6월말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에서는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현행의 입찰계약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생각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입찰계약제도와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도급한도액제도, 제한경쟁제도 등 6가지 사항에 관한 44개문항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토건, 건축, 토목면허와 특수면허를 갖고 있는 870여개의 일반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은 우편발송 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870개 업체에게 발송된 조사표 가운데 총 178개업체가 응답을 해와 약 20.5%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회수된 조사표는 매우 성실하게 작성되었다.

총 178개 응답업체중 토건업체는 129개업체였으며, 토목 19개업체, 건축 24개업체, 특수면

허만을 보유한 업체는 6개업체(철강재1, 조정5)였다. 그리고 토건면허업체 가운데 특수면허를 중복보유 하고있는 업체는 65개업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45개업체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였고 지방업체가 74.7%를 차지하였으며, 회수율은 지역별 업체수에 거의 비례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기업규모별 분포에 있어서는 조달청편성군(6개군 기준으로 조사) 기준으로 1군 18개업체, 2군 23개업체, 3군 23개업체, 4군 28개업체, 5군 28개업체, 6군 29개업체, 기타 24개(해당군 미기재 5)업체로 대·중·소기업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우편서베이로서는 비교적 높은 20.5%의 회수율과 면허별 분포, 지역별 분포, 기업규모별 분포 등이 고르게 나타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설문결과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대표성을 상당히 부여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설문문의 주요사항별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II. 입찰·계약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

얼마전 신행주대교 붕괴사건 등으로 건설업은 세간의 매우 심한 질타를 받았다. 또, 입찰·계약제도 감리감독제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개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정 사건의 여파로 인해 추진되는 여러가지 제도 개선 이외에도 건설 수요구조의 변화, 시장 개방 등 대내외 건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건설 업계로서는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업계의 응답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178개 응답업체중 56개업체가 면허체계의 개편 및 면허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응답하였고, 자재인력문제 37개업체, 담합 또는 수주와 관련된 부조리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7개업체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지고 있는 입찰·계약제도 및 감리감독문제를 지적한 업체는 각각 1개업체에 그쳐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당시 신규면허의 개

<표1> 건설업계의 당면과제

	Frequency	Perct
기술장비낙후	18	10.1
면허제도개선	56	31.5
입찰계약제도	1	0.6
담합과부조리	31	17.4
감리감독제도	1	0.6
시장개방압력	19	10.7
도급질서정립	6	3.4
금융세제문제	9	5.1
자재인력문제	37	20.8
	178	100.0

방문제가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었던 점을 감안할때 면허제도를 가장 먼저 꼽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지난 몇년동안 자재와 인력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리문제나 입찰계약제도에 대한 지적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이나 조사시점이 창선대교 및 신행주대교사건 이전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특히 감리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히 낮게 나타난 것은 형식적 절차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감리 현실을 잘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입찰·계약제도의 경우는 제도 그 자체보다 운용상, 집행과정상 문제(담합 및 수주관련 부조리)가 더 크다는 업계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업들이 그와같이 입찰·계약제도에 관한한 운용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설문결과<표2>에도 잘 나타나 있다. 현행 입찰 계약제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에 불과한 반면, 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1.4%, 둘다 문제가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체도 전체의 56.6%에달해 제도의 운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찰·계약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결과<표3>를 보면 이미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한 저가심사제도를 꼽은 업체가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고, 예정가격산정 및 부당삭감문제를 지적한 업

<표2> 현행 입찰계약제도에 대한평가

	Frequency	Perct
합리적임	7	4.0
운용상문제	55	31.4
제도에문제	14	8.0
모두문제	99	56.6
계	175	100.0

Frequency Missing = 3

〈표3〉 문제점이 가장 많은 입찰계약제도

Frequency Row Pct	도급한도액 제 도	제한경쟁 제 도	저가심사 제 도	예정가격 제 도	지명수의 계약제도	계약금액 조정제도	Total
1군	1 5.56	6 33.33	1 5.56	9 50.00	1 5.56	0 0.00	18 100.0
2군	3 13.04	3 13.04	7 30.43	7 30.43	2 8.70	1 4.35	23 100.0
3군	2 9.09	4 18.18	10 45.45	5 22.73	1 4.55	0 0.00	22 100.0
4군	0 0.00	4 14.81	11 40.74	9 33.33	2 7.41	1 3.70	27 100.0
5군	4 14.29	4 14.29	11 39.29	8 28.57	1 3.57	0 0.00	22 100.0
6군	3 10.34	5 17.24	11 37.93	8 27.59	2 6.90	0 0.00	22 100.0
기타	3 13.04	5 21.74	10 43.48	4 17.39	1 4.35	0 0.00	23 100.0
Total	16 9.41	31 18.24	61 35.88	50 29.41	10 5.88	2 1.18	170 100.0

제가 29.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기업규모 별로는 비교적 큰 기업에 속하는 1, 2군업체가 예정가격제도에 가장 문제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3군이하 중소기업체는 저가심사제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P.Q제도의 도입, 기업능력에 따른 낙찰자선정 방법등에 대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업체는 현행 가격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찰자 선정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낙찰자선정방법의 도입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현행과 같이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15.8%에 불과한 반면, 기술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업체가 14.1%, 시공경험 및 경영능력 그리고 신용을 중요시 해야한다는 업체가 각각 2.3%, 7.9%였고, 위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하여 업체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낙찰자선정방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한 의견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없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장개방등에 대비하고 업체의 체질강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및 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표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부가 선도적으로 기술개발투자를 늘리고 개발된 기술을 업계에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31.4%)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22.1%, 턴키발주의 확대 및 P.Q제의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도 21.5%로 나타나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기업의 기술

〈표4〉 기술능력 및 경쟁력 제고방안

	Frequency	Perct
Turnkey확대 PQ도입	37	21.5
투자지원(금융·세제)	38	22.1
신기술보상	21	12.2
우수업체활성화	18	10.5
정부투자확대 및 보급	54	31.4
설계·시공일괄금지폐지	4	2.3
	172	100

Frequency Missing = 6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입찰·계약제도가 개선되고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업체로서는 아픈 일면이면서도 업계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기도한 담합행위에 대한 설문에서 업계는 비교적 성실한 응답을 하였다. 입찰시 담합이 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54.0%가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예가 자체가 턱없이 낮은 데다가 재무관이 부당금액까지 행하므로 공사비 보전을 위해서 담합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19.3%에 달했다. 즉, 전체의 73.3%가 어떤 형태든 낙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밖에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약 10.8%, 지역업체의 공동이익 즉, 자기지역업체가 수수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담합을 이용한다는 의견도 약 16%를 나타냈다.

III. 도급한도액제도

도급한도액제도와 관련해서는 총 10개항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선, 현행 도급한도액제도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약 43.1%가 도급한도액산정이 너무 공사실적에만 의존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41.4%는 도급한도액을 획일적,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입찰시 불합리한 점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9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종별 세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업체는 전체의 7.5%로 도급한도액 산정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급한도액의 공종별 세분화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므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6.2%, 바람직 하지만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는 의견이 27.7%를 보임으로써 약 64%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31.6%는 번거로운만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1군, 2군, 3군업체들이 공종별 세분화에 긍정적인 반면, 5군이하

소형업체들은 부정적인 경향을 높게 나타냈다. 면허별로는 토건업체의 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건축단일 또는 토목단일업체의 경우는 각각 51.2%, 47.3%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공종별 세분화를 실시할 경우 이들 단일면허업체들이 토건업체들에 비해 도급한도액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단일면허에서 유지해 왔던 도급한도액 순위마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도급한도액 산정의 공종별 세분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된다.

도급한도액의 세분화 공종에 대해서는 토목공사만 세분화 하자는 의견 10.9%, 건축공사만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7.5%인데 반해 건축, 토목 둘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건축, 토목외에 전기, 통신, 기계설비까지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9.5%, 42.2%로 높게 나타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사를 공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도급한도액 산정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항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공사실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1.1%, 경영능력평가라고 응답한 업체가 33.5%인데 반해 기술개발투자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업체는 15.3%에 그쳤다.

UR협상과 P.Q제의 도입등에 따라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업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8%, P.Q제도 등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6.2%로 원칙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약 46%인데 반해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39.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중대형업체보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IV. 제한경쟁제도

제한경쟁제도 및 그 운용에 관해서는 9개 항목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한경쟁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응답업체의 약 38.3%가 응답한 실적제한제도의 운용으로 나타났다. 즉, 제한경쟁의 여러 가지 방법중 실적제한의 운용에 가장 문제가 많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고, 기타 균제한, 면허제한, 지역제한, 한도액제한 등은 각각 17.7%~13.1% 사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제한경쟁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방법인 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운용상의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업계가 이에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제한경쟁방법이 업체의 난립을 막고 수주과정에서의 부조리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우리나라 건설업 풍토에 알맞는 제도라는 의견이 24.2%, 과다제한의 문제, 제한기준 설정의 임의성 및 불합리성 등으로 기업의 적극적 입찰행동을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24.7%로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작용과 함께 동제도가 세계적 조류에도 맞지 않으므로 무조건 폐지하고 다른 입찰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10.7%, 제한방법의 객관적 기준설정, 발주자의 자의성 배제 등 동제도를 개선하면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39.9%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의 약 35%정도는 현행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현행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약 65%정도는 동제도를 존속시키되 그 운용방법을 개선하여 제한경쟁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최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제한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간, 대기업과

<표5> 도급한도액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

Frequency Row Pct	폐지찬성	현행존속	장기적폐지	개선시켜존속	Total
1군	0 0.00	4 22.22	6 33.33	8 44.44	18 100.0
2군	2 8.70	2 8.70	8 34.78	11 47.83	23 100.0
3군	3 13.04	5 21.74	6 26.09	9 39.13	23 100.0
4군	4 14.29	5 17.86	8 28.57	11 39.29	28 100.0
5군	5 18.52	1 3.70	8 29.63	13 48.15	27 100.0
6군	13 44.83	5 17.24	4 13.79	7 24.14	29 100.0
기타	7 29.17	3 12.50	5 20.83	9 37.50	24 100.0
Total	34 19.77	25 14.53	45 26.16	68 39.53	173 100.0

Frequency Missing = 6

〈표6〉 지역제한제도의 개선

Frequency Percent Row Pct Col Pct	기준상향 운용	기준내려 운용	무조건 폐지	제한기준 및 방법 바꿈	Total
서울 업체	1	9	13	21	44
	0.57	5.17	7.47	12.07	25.29
	2.27	20.45	29.55	47.73	—
	1.19	81.82	72.22	34.43	—
지방 업체	83	2	5	40	130
	47.70	1.15	2.87	22.99	74.71
	63.85	1.54	3.85	30.77	—
	98.81	18.18	27.78	65.57	—
Total	84	11	18	61	174
	48.28	6.32	10.34	35.06	100.00

Frequency Missing = 4

중소기업간 입장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3%, 기준금액을 대폭 내려 실질경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였으며, 조건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10.3%, 지역제한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되 제한방법을 금액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바꾸어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5.1%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를 나누어 살펴 볼 경우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업체의 경우 현행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업체가 단 1개업체(2.3%)에 불과한 반면, 내려야 한다 20.5%,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29.6%, 제한기준 및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 47.7%를 나타냈다. 지방업체의 경우는 기준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15%,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3.8%, 그리고 제한기준 및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업체도 30.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지방업체는 현행의 틀에서 기준금액만을 성향시키는 것을, 서울업체는 동제도의 폐지 또는, 다른 제한방법으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업체규모에 따라서는 기업규모가 비교적 큰 1~2군업체가 동제도의 폐지 또는 지역제한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3군이하 업체의

경우 대부분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조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둘러 싸고 매년 되풀이 되는 서울과 지방업체간 갈등을 해소하고 UR등에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제한시 공사금액을 지역제한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낙찰시 해당지역업체에 낙찰율을 우대해 주는 방법으로 바꾼다면 그 우대폭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인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약 60.6%가 5%이하(5%라고 한 응답이 42.6%)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10%이상이어야 한다는 업체도 약 27.7%에 달했다(응답업체중 90.7%는 지방업체이고, 서울업체 9.3%).

현재 8개군으로 편성되어 있는(설문진행중 6개군에서 8개군으로 바뀜) 군편성에 대해서는 현재정도의 균규모가 좋다는 의견이 28.1%, 30~40업체 정도로 각군을 편성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9.9%로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군편성 업체수가 작은 것을 선호하고 소기업으로 갈수록 현행정도의 군편성규모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예정가격제도 및 계약금액조정제도

예정가격제도 및 계약금액조정제도에 관해서

는 5개항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정가격제도 및 그 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재료비, 노무비 등 기준단가의 비현실성 문제로 응답업체의 43.2%가 이를 지적하였다. 또, 재무관에 이한 부당감액 문제가 23.1%, 정부원가계산체계의 불합리 14.2%로 이들 세가지를 지적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계약금액조정제도의 경우 규격자체는 어느정도 정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발주처가 조정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45.6%에 달하므로써 실제 적용상의 어려움이 지적되었고, 예가가 당초부터 낮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증액을 목적으로 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의견도 27%에 달하므로써 시공상의 문제점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설계변경 이외에도 공사금액의 증액만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변경도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가격의 산정과 기업의 담합행위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업체의 거의 반에 달하는 업체(41.5%)가 별관계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예가산정이 적정하지 못하여 담합이 일어나므로 예가산정이 적정해진다면 담합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약 49%나 되었다. 반면, 발주처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담합방지를 위한 예가산감 즉, 기업들이 담합을 하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예가의 삭감을 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업체도 약 8%가량 되었다.

한편, 입찰업체가 덤핑이나 담합 예정가격의 탐지없이 정상적인 입찰을 행할 경우 기업의 추정하는 입찰가와 예가사이에는 어느정도 오차가 생길것느냐는 설문에 대해 1~2%이내일 것이라는 응답이 22.5%, 3~4%가 36.1%, 5%가 23.7%등 5%이내의 오차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82.2%에 달한 반면, 그 이상의 오차가 날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7.8%에 불과하였다.

VI. 저가심사제도

최근 순수최저가낙찰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

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저가심사제에 대해서는 5개항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저가심사제가 덤핑방지 및 낙찰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업체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였고, 실질적 심사기능의 미비, 실효성이 없음, 직공비 탐지를 위한 부조리 발생의 원인 등 저가심사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업체는 각각 27.7%, 17.9%, 39.9%로 전체의 85.4%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심사제가 폐지될 경우 덤핑 등 출혈결쟁이 극심할 것이다(39.8%), 일부공사에서 덤핑이 나타날 것이다(18.7%) 등 업체는 과당경쟁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연대보증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8%에 불과하여 기업들이 이 제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과 같이 보증회사나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공사이행을 보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만이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 효과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VII. 사전자격심사(P.Q) 제도

얼마전 '93년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 P.Q제도에 관해서는 7개항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P.Q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표7>에서와 같이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11.9%, 대규모공사로 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 58.9%, 도입이 필요하나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의견 24.4%로 나타남으로써 P.Q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전체의 4.8%인 8개업체에 불과하였다. 또 P.Q의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고(1~3군업체는 반대의견이 없었음),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P.Q도입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P.Q제도가 도입되

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도입여건의 미성숙, P.Q심사체계의 미정립, 정부의 의지부족을 들었으며, P.Q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건설업풍토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14.7%에 불과함으로써 그동안의 미도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럴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Q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사실적 및 시공의 질을 꼽은 업체가 38.7%, 기업의 성실성 및 신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업체가 28.3%, 기술능력과 보유장비가 중요하다는 업체가 20.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기업의 재무구조나 자금능력 등 경영능력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재해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1.6%, 0.6%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P.Q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공사로는 토목공사와 특수공사가 각각 40.2%, 28.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토목 공사중에서는 댐·발전소(50%), 도로·교량(22%), 철도 및 지하철(20.8%)순으로 P.Q제가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기능별로 상업용건축(53.6%), 주거용건축(28%), 업무용건축(12.5%)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규모공사로 부터 P.Q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시점에서 P.Q제도의 시행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공사규모는 전체의 47.6%가 200억원이상 공사를 꼽았고, 100억원이상 27.6%, 50억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업체는 13%로 나타났다.

VIII. 맺는말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의 입찰행동과 입찰·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밝힌 사항들은 설문조사중 일부만을 간추린 것이다. 모든 제도나 정책들이 그렇듯이 제도나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본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모든 대상을

〈표7〉 PQ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Frequency Row Pct	당장도입 되어야함	필요하나 여건미성숙	점진적도 입후정착	반 대	Total
1군	3 16.67	4 22.22	11 61.11	0 0.00	18 100.0
2군	4 17.39	5 21.74	14 60.87	0 0.00	23 100.0
3군	4 17.39	8 34.78	11 47.83	0 0.00	23 100.0
4군	2 7.41	4 14.81	20 74.07	1 3.70	27 100.0
5군	2 7.41	8 29.63	16 59.26	1 3.70	27 100.0
6군	4 14.29	5 17.86	14 50.00	5 17.86	28 100.0
기타	1 4.55	7 31.82	13 59.09	1 4.55	22 100.0
Total	20 11.90	41 24.40	99 18.93	8 4.76	168 100.0

Frequency Missing = 10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도나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7월에 실시된 이번조사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로는 설문내용중 많은 업체들이 지지를 표명했거나 개선방안으로 지적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최근의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제도개선을 대부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개선방향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설문결과로 보아 기업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해당기업의 사정만을 고려한 응답이라고 평가할 만한 몇가지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설문결과로 볼때 업체가 성숙한 자세로 현상을 직시하고 있고, 건설업 전체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 대부분이 자세한 표를 곁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 또한 자세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러한 설문결과들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정책당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